

#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대한 통상동향

본회 국제부

## 1. 미국의 통상동향

### 1) 새 의회

이번에 출범한 새 의회는 전번 의회와 특별히 변할 것 같지 않을 전망이다. 100여명의 의원이 의회에 새로 들어 왔으나, 기존 위원들 특히, 기존의 의회 민주당 인맥은 강력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의회에서 무역문제에 영향을 끼칠 인물들로는 상원에서 뷔커스(Baucus), 미첼(Mitchell), 리베르만(Lieberman), 록펠러(Rockefeller), 스펙터(Specter) 등이고, 하원에서는 다수당의 리더인 게파르트(Gephardt), 레빈(Lebin), 기본스(Gibbons)와 로스텐코우스키(Rostenkowski) 등이다.

의회는 국제무역과 관계되는 여러 조치를 많이 도입할 것이며,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 낼 것이다. 여기에는 NAFTA의 법적 승인절차도 포함될 것이다.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의 승인으로 “88종합 무역법 및 경쟁법”과 같은 미 무역법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88년 무역법은 미 반덤핑법에 반우회 조항을 도입했으며,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를 만들었음)

게다가 UR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모든 UR협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UR이 타결되지 못하면,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을 연장토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다.

NAFTA 지지 및 UR의 승인에 관계없이 차기 의회에 종합무역법안(Broad Trade Bill)이 도입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되고 ’92년 7월 상원에 “’92 통상확대 및 강화법안”으로 도입되었던 ’92 통상확대 법안의 많은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2) 클린턴 행정부

냉전체제가 종식된 미국의 對外(非무역분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무역정책에서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다. 냉전체제 중, 미행정부는 미국에 우호적이고, 소련에 적대적인 국가에 무역양보를 해 왔다.

새 행정부가 전행정부와 같이 세계적인 우호국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같은 정도의 무역양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3)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클린턴 행정부와 새 의회 모두 최우선 경제정책은 국제무역이 아니라 국내 경제문제이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내외무역의 상관관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문제 가 될 것이다. 국내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 클린턴은 그의 자유무역신조를 의

회의 민감한 보호주의자들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보호법안의 통과로 대외무역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부분적으로는 대외정책에서 부시 행정부하에 점증하는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정학적 의미의) 대외정책과 국제무역과 관련된 대외정책 사이에 미정부구조에서의 전통적 차이점은 행정부에서 조직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기존의 구조로는, 일반적으로 국무성은 지정학적인 일을 취급하여, 미무역대표부와 활동 범위를 미약하나마 상무부가 국제무역에 관련된 일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구분이 계속된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새로운 부처간의 정책위원회(Inter-departmental Policy Councils)를 통해 지정학적 외교정책과 국제무역간 외교정책을 국무성, USTR, 상무부 사이의 긴밀한 협조로 그 관계를 상호간에 밀접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USTR과 상무부를 통합할 수도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시장접근, 수입통제와 “공정한” 경쟁, 지적소유권, 국내 경쟁력과 산업정책, 해외투자 및 과세, 특정국에 대한 정책 등이다.

## 2. 시장 접근

미국내경기 침체는 경기침체에 대한 처방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의회와 부시 행정부는 무역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미의 재화와 용역이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점차 초점을 맞춰 왔다. 미는 UR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접근 및 개방에 대해 협상을 추구하였다.

### 1) 수퍼 301조

시장개방압력을 넣기 위해 새 의회는 ‘수퍼 301조’를 부활할 움직임이 보인다. 이것은 풍부한 시장접근을 허용치 않는 국가들에 대해

서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선협상국가를 지정할 것이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하에 그러한 국가들과 시장접근 협정에 관해 협상을 별일 예정이다. Section 301조하의 제재조치는 이용 가능하며, 실지로 협상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필요하다. 수퍼 301조는 원래 ’88년의 무역법안에 일시적인 기간동안에만 도입되었으며, ’92년의 통상확대법안에 이 법의 부활이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수퍼 301조의 부활을 지지하였다. USTR의 칼라힐스 대표는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수퍼 301조의 부활에 강력히 반발했었다.

힐스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해서 교체될 것으로 보여, 클린턴 행정부 아래 의회의 수퍼 301조 부활에 대한 극렬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 Section 301조하의 쌍무협상

클린턴 행정부의 USTR은 해외시장개방을 위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활된 수퍼 301조와 현재의 Section 301조의 범위안에서 쌍무협상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쌍무협상과정은 USTR의 힐스에 의해 對중국 시장접근, EC오일시드 보조금, 캐나다 맥주 등에 관한 최근의 논쟁상황과 비슷하다.

협상이 깨진다면, USTR은 이용 가능한 궁극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Section 301조하에 수입되는 물품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그러한 협상의 초점이 되는 제품은 반도체, 농약, 통신, 제약, 컴퓨터, 의료기기, 자동차 및 부속품, 중기기, 철강제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쌀과 같은 농산물 등이다. 이러한 쌍무협정은 미-일반도체 협정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외국의 특정 기간동안 특정 제품을, 일정한 수준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 3) 기존 체결된 협정의 준수

의회는 쌍무시장접근 협정에 관한 동의를 확실히 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미의 산업계나 기업 등

과 같은 민간측에서 미와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가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USTR 또는 상무부)에 제소행위를 허용할 수도 있다.

미산업계는 미-일반도체협정과 미-대만 간 지적재산권협정에 있어 협정준수 정도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부분적으로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신설하여 그러한 비판에 대처할 수 있다.

#### 4) 수입 절차

미는 다른 국가들의 수입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검사제도를 통해 시장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은 관세 및 쿼터와 같은 형식적인 무역장벽은 낮추고 있지만, 수입을 연기시키거나 교묘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비관세장벽(행정적 수입절차 포함)이 계속 존재하는 EC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 계속 비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미는 이 점에 대해 한국에 대해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며, 중국이 관세장벽을 낮추더라도 세관절차에 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수입제한과 공정한 경쟁

미수출품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미는 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계속 추구하는 외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히 하원의 민주당원들에게서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1930년, 미는 수입품에 대해 강력한 보호정책을 펼쳤으며, GATT체제하에서의 활동범위는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UR이나 GATT체계가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 한 미국은 어떠한 관세나 쿼터인상을 추구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혜국 및 수혜상품에 대한 GSP혜택을 제외시키거나, 중국과 같은 최혜국 대우(MFN)의 폐지를 통해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목표중의 하나는 미국산업의 보호에

있지만, 의회와 행정부는 근로자의 권리, 환경보호 등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 할 것이다.

#### 1) 환경보호

새 의회와 행정부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 환경기준을 부과하도록 무역조치를 펼칠 것이다. 의회의 기술평가 사무국은 무역과 환경보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년에 발간했다. NAFTA하에서 환경조약은 자유무역 협정규정에 선행한다.

#### 2) 반덤핑

클린턴 행정부는 최근에 실시했던 것과 같이 반덤핑법을 지속적으로 발동할 것이다. 행정부는 민간측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 반덤핑법하에서는 행정부의 융통성을 거의 없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의 공화당 행정부보다 미국회사의 공식적인 제소없이도 반덤핑조사의 자체 발동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의회는 더욱 강력한 반덤핑 구제제도를 위해 더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첫째, 이것은 '92무역확대법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강화된 반-우회 금지조항(ANTI-Circumvention)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우회금지조항은 심각한 실행상의 결점이 있으며, 민주당 정부에서도 거센 반대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의회는 반덤핑법하에 개인의 행동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회사가 DOC나 ITC를 통한 행정적 소송절차보다 일반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될 것이다. 이 구제제도는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근거로 한 대표적인 사례이나,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 3) 정부 보조금

정부보조금 분야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과거 의회는 Section 301조와 상계관세법에 따라 보상요구에 더욱 적극적 이었고 수입을 금지시키는데 점증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 4. 지적 재산권

### 1) Section 337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 ITC에 제소할 수 있는 개인적 구제제도인 Section 337조는 GATT에 위배 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다. 그러나, Section 337조가 UR의 테두리에서 삭제되거나, 미국의회가 Section 337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UR협상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Special 301

USTR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Special 301조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해 중국, 뉴질랜드, 대만에 압력을 가했다.

USTR은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에 구제제도 및 실행, 소프트웨어, 반도체, 의약품 같은 분야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3) 새 입법조치

새 의회는 Special 301조하에 USTR의 협상 권한을 확대하고, 우선협상국에 보복조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 게다가, 새 의회는 효과적인 재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GSP, MFN 기타 새로운 무역특혜와 같은 부문과 연계할 것이다.

## 5. 경쟁력 및 산업정책

새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 첨단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도입되거나 교육프로그램이나 근로자 재교육 등과 연계되는 종합산업정책의 일부로서 도입될 예정이다.

### 1) 의회

의회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연구 및 개발 특히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지해 왔다. 이것은 이전에 방위산업 계약과 국방관련 연구·개발에서 평화시의 연구·개발분야로 정부자금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 2) 클린턴 행정부

클린턴과 고어는 첨단산업육성에 정부 개입 강화를 옹호해 왔다. 그러한 정책에는 근로자 교육, Sematech와 같은 정부/기업간 협력사업, 정부출연 지역기술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다. 클린턴의 경제자문역이며, 클린턴 정부 인수팀의 경제정책 특보인 로버트 라이히는 과거에 이러한 산업정책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히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사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난해 왔으며, 그의 위치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 3) 新 산업정책

산업정책에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수출진흥을 통한 국내 산업육성이다. 이러한 측면은, 반도체, 통신, 자동차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둘째, 산업정책에는 외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핵심산업의 육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에는 미국의 기업, 정부, 학술연구소 등 어디에서 개발되던 간에 선정된 혁신기술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주어 상용화하는 것이다.

클린턴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NEC)의 설립을 공언했으며, NEC는 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의 결속장치와 산업정책의 수립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상무부는 우선적으로 수출확대와 새로운 기술촉진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 6. 해외투자 및 과세

과거 의회는 미국내의 외국인 투자규정 강화를 요구했었다. 차기 의회에서 증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강화, 외국인 통제하의 핵심적 산업의 보호, 상무부, 통계청, 국세청(IRS)을 포함한 정부기구간 정보공유 등에 대한 법안들이 입안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클린턴 행정부하에서도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별일 예정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 7. 특정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역정책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냉전체제하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여기는 관행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구제제도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조항에는 특히 시장접근의 부족, 정부보조금, 덤핑, 기업연합 및 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

### 1) 한국

한국을 포함한 관련된 기존의 반덤핑 명령 및 조사는 계속된다. 새 행정부는 이것을 종결시킬 만한 법적 권한이 없다(기존의 반덤핑 법하에서는 Suspension Agreement가 유일함).

의회는 외국의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존의 입장을 전환할 것 같지는 않다. USTR과 의회는 쌀시장 개방, 반도체, 통신기기 및 씨비스에 대한 개방압력을 계속할 것이다. USTR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와 미국 업체의 투자개방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국은 노동권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분야에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한·미 영업환경개선(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PEI) 하에 이루어진 지난 몇 달간의 공동노력의 미래는 그 곳이 부분적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협정에 의한 것이어서 그 실행여부가 의문시 된다.

### 2) 대만

상무장관 등 고위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무역대표부의 힐스는 대만과의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가 중국을 격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무역의 구조협상, GATT가입의 협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허용을 통해 대만과 통상관계에 있어 긴밀히 협조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하에서도 국가안보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300억불의 환경구조계획을 포함한 대만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만에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호적인 자세가 유지될 것이다.

### 3) 베트남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기조를 폐기하고, 베트남에 대한 수출금지를 폐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의 반대와 군경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에 주의를 요할 것이다. 국교정상화는 새 행정부에 의해 POW/MIA문제에 대한 협력을 조건으로 진행될 것이다.

### 4) 일본

일본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통상협상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층점 대상이었으며, 의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계속 될 것이다.

특히, 농산물(쌀 포함),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시장접근문제가 행정부와 의회에 의해 중점 강조될 것이다.

### 5) 북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국제무역(상무부와 USTR의 권한)보다는 국가안보(국방부 권한)에서 더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능력에 우려를 해 왔으며, 북한에 대한 수출규정을 엄밀히 실시하고 북한에의 기술이 전금지를 엄격히 실행할 것이다.

## 6) 중국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는 인원, 군축, 불공정 무역관행, 행정적 수입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재정을 요구할 것이다. 1993 MFN 지위의 연장은 이러한 분야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협정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통상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세는 부분적으로 중·러 관계에 달려 있다. 냉전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양보도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으나, 구소련의 붕괴로 양보에 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중국과 러시아가 밀접하게 되거나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경우 변화할 수도 있다. 이번 달에 중국에 파견되는 프랭클린 상무장관 등으로 이루어진 고위사절단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부시행정부의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다.

## '93 북경국제박람회 파견업체 모집 안내

한국과 중국은 최근 국교수립에 이어 양국 간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등의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되는 등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중국은 우리나라 제3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는 국내업계의 대 중국시장 진출확대 지원을 위해 중국 최대 종합박람회인 '93 북경국제박람회에 국가관으로 참가예정으로, 동박람회 파견업체를 아래요령으로 모집하오니 업계여러분의 많은 참가 신청바랍니다.

### 1. 박람회 개요

- 명칭 : 제3회 북경국제박람회(BIF '93)
- 기간 : '93. 4. 2~4. 8(7일간)
- 장소 : 중국 국제전람중심(CIEC, 북경)
- 규모 : 50,000S/M(국내 및 해외)
- 성격 : 중국 최대의 종합무역박람회(격년제)

### 2. 한국관 참가계획

- 참가규모 : 800 S/M~1,000 S/M(국가관)
- 파견업체 : 15개사 내외
- 출품품목 : 종합품목(생산재 및 소비재 전반)

### 3. KOTRA 지원사항

- 전시면적 및 기본 전사장치 제공
- 전시품 현지운송 및 통관지원(발송비는 업체부담)
- 현지 사전홍보 및 업체별 거래알선
- 현지 입국수속, 호텔예약 등 행정지원

### 4.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한 : '92. 11. 16~12. 20(면적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면적 : 9 S/M~100 S/M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KOTRA 소정양식) 1부
  - 출품상품 카타로그 각 2부
  - 참가신청 예치금 입금증 사본 1부
- 참가비 : 참가비 금액 및 납부방법 추후 확정 통보

### 5. 문의처

- KOTRA 전시부 해외전시 2과  
(TEL : 551-4421, FAX : 557-5784)